

보 건 복 지 부

시 정 요 구

제 목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관리 소홀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원주시, 삼척시, 횡성군, 화천군, 인제군, 양양군

내 용
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30조, 제47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「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」 등에 따르면, 보장기관(시·군·구청장)은 보장시설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급여의 전부를 중지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시설생계급여는 월 급여 지급기준을 일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, 이미 지급한 생계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명령을 하여야 한다.

그런데 원주시 등 6개 시·군에서는 ‘○○○○○○○○(노인요양시설)’ 등 21개 보장시설수급자의 사망 월 생계급여를 지급하면서 ○○○ 등 50명에 대한 과잉지급된 시설생계급여 3,233,704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았다.

조치할 사항 원주시장은

보장시설 입소 중 사망한 수급자에게 과잉 지급된 시설생계급여 192,674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삼척시장은

보장시설 입소 중 사망한 수급자에게 과잉 지급된 시설생계급여 140,140원을 회

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횡성군수는

보장시설 입소 중 사망한 수급자에게 과잉 지급된 시설생계급여 305,900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화천군수는

보장시설 입소 중 사망한 수급자에게 과잉 지급된 시설생계급여 426,670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인제군수는

보장시설 입소 중 사망한 수급자에게 과잉 지급된 시설생계급여 488,836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양양군수는

보장시설 입소 중 사망한 수급자에게 과잉 지급된 시설생계급여 1,679,484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